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〔도병두 의원 발의〕

의안번호	2282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2. 12. 21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 의원

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검토 및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원활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 및 조례안·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회·위원회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(안 제2조제3호 및 제7호)
- 나.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출자·출연기관·법인의 기준 확대(안 제2조제6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현행조례 : 별도 첨부
 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 - 3) 입법예고 : 2022. 12. 22. ~ 2022. 12. 27.
 - 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,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, 제5호,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(중
전의 제3호) 중 “법 제126조” 를 “지방자치법 제126조” 로 하며 같은 조에 제
3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구청장의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)
이상인 사람

7.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·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
중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

제2조제6호(중전의 제5호)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6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
출자·출연기관·법인의 임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1】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<u>법 제126조부터 제130조</u>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담당관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「<u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<u>서울특별시 금천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</u>의 임원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범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구청장의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) 이상인 사람</u></p> <p>4. <u>지방자치법 제126조</u>-----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「<u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·법인의 임원</p> <p>7. <u>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·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</u></p>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01. 13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, 2022. 01. 1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'98.7.3, '07.02.28, '08.04.08, '19.05.09 >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부구청장
2.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<개정 '98.9.26>
3.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담당관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<개정 '07.02.28, '08.04.08, 2022.1.12.>
4. 「지방자치법」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<개정 '07.02.28, '08.04.08, 2022.1.12.>
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<신설 '19.05.09>

부 칙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'98.7.3)

이 조례는 199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'98.9.2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2.2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8.4.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027호, 2019.5.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제1234호, 2022.1.12.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
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**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